

AI 발생시 긴급행동지침

농 립 부

1. 발생확인시 긴급조치사항

1) 시장·군수 조치사항

- 가. 조류인플루엔자방역대책본부 설치·운영
- 나. 오염지역(500m), 위험지역(반경 3km), 경계지역(반경 3~10km)의 방역지역설정, 방역지역내 감수성동물의 소유자 등에게 이동제한 명령

- ① 발생농장, 발생지에 이동통제초소 설치·운영
 - 출입자·출입차량에 대한 통제·소독실시 (기록관리)
 - 탈의실, 샤워장, 소독기구(장비) 설치·운영
- ② 주요국도 및 지방도로에 이동통제초소 설치 : 감수성 가축 및 축산물 이동제한
- ③ 해당가축·축산물의 불법이동 및 반출시 사법조치
- ④ 방역지역에 대한 소독 등 차단방역 실시

2) 이동제한 대상 및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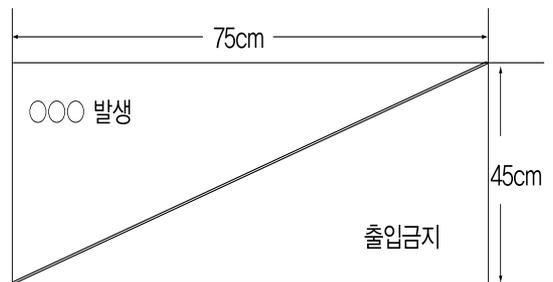
〈표 1〉 참조

2. 발생장소에서의 방역요령

1) 현장방역 조치

- 가. 발생장소로 출발하기 전 현장통제본부 요원은 긴급방역용 용구를 준비하고 추가로 필요한 물품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 나. 발생장소의 주변에 울타리를 임시로 설치하거나 눈에 띄는 색깔의 줄로 경계를 표시하고 입구의 눈에 잘 띄는 장소에 아래 [별표]와 같이 출입금지 표지판을 게시한다.
- 다. 비감수성 동물을 사육하는 경우 감염동물 또는 오염장소와 접촉되지 않도록 별도의 장소에 계류시킨다.
- 라. 발생장소의 입구에 [별표 5]의 갱의 및 세척·소독시설의 설치요령에 따라 세척·소독시설을 설치한다.

[별표] 출입금지 표지판



(흰색 바탕에 검정글씨, 붉은 사선 2줄)

〈표 1〉 이동제한 대상 및 내용

구분	축종	위험지역(3km)	경계지역(10km)
가금	닭	반출·입 금지	가축방역관의 지도·감독하에 반출·입 허용
	오리	반출·입 금지	반출·입 금지 다만, 출하 3일전 관할시험소에 신고하여 검사후 음성인 경우 지정도축장에 출하 허용
분뇨	공통	농장내 매몰 또는 축사내 보관 다만, 산란계의 경우 농장내 이동허용, 농장 밖 반출은 금지	농장 밖 반출금지. 다만, 닭의 분뇨는 가축방역관의 지도·감독하에 경계지역내 공동처리장으로 이동가능
사료·깎짚·왕겨	공통	농장 밖 반출금지, 위험지역안 운행 전용차량 이용에 한하여 사료의 반입 허용	깎짚·왕겨는 농장 밖 반출금지, 사료의 경우 소독실시후 농장내 반입
부화장	닭	폐쇄(부화란 폐기)	가축방역관 지도·감독하에 부화 및 부화 병아리 반출 허용
	오리	폐쇄(부화란 폐기)	이동제한지역 밖에서 반입된 종란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화 및 부화 병아리 반출 허용
도축장	닭	경계지역산 닭만 도축	가축방역관의 지도·감독하에 도축 허용
	오리	경계지역산으로 출하전 검사결과 음성인 오리에 한하여 도축	출하전 검사결과 음성인 경계지역의 오리에 한하여 도축 허용
종란	닭	폐기. 다만, 이동제한전 생산된 종란은 포름알데하이드 훈증소독후 방역관 지도·감독하에 이동 허용	가축방역관의 지도·감독하에 이동 허용
	오리	폐기	폐기
식용란	닭	폐기	예찰결과 이상없을 경우 식용 허용
	오리	폐기	폐기
출입자	공통	통제초소 및 가금류 농장 출입시 신발 및 손 소독 후 통행 허용	-
차량	공통	가금류·생산물·사료·동물약품·왕겨 등 운반차량은 차량외부·바닥·바퀴·운전석 등 소독후 통행 허용 다만, 분뇨운반차량 통행금지	가금류·생산물·사료·동물약품·왕겨 등 운반차량은 차량외부·바닥·바퀴 소독후 통행 허용 다만, 분뇨운반차량은 통행금지 하되, 경계지역 공동처리장으로 닭의 분뇨운반차량은 소독후 이동 허용

[별표 5] 갯의 및 세척·소독시설의 설치요령

1. 갯의 및 세척·소독실은 청정구역과 오염구역으로 구분하여 설치하고 사워를 한 후에만 청정지역으로 나올 수 있도록 설계한다.
2. 사워 및 차량세척 등에 의해 발생하는 오수는 일정한 장소에 모아 소독처리 한다.

- 마. 발생장소로 들어가는 모든 사람은 세척·소독시설을 통과하도록 하고, 이때 시설 내의 갯의실에서 세척·소독이 용이한 작업복으로 갈아입어야 한다.
- 바. 발생장소 밖으로 나오는 모든 사람은 세척·소독시설을 통과하도록 하고, 이때 사용한 작업복 등은 수거통에 담아두어야 한다.
- 사. 발생농장 및 발생지에 출입하는 차량이나 장비는 반드시 세척·소독한 다음 밖으로 나올 수 있다.
- 아. 사람·차량 등에 대한 이동통제 및 세척·소독 실시는 이동제한 해제 시점까지 유지되어야 한다.
- 자. 병원체의 전파원인이 될 수 있는 오염장소에 대한 세척 및 소독을 실시한다.
- 차. 주변에 야생동물이나 쥐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현장방역팀에게 보고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도록 한다.

3. 이동통제중 가축의 운반 및 처리요령

1) 소각·매몰 또는 렌더링 처리를 위한 가축의 운반요령

가. 소각·매몰 장소 또는 렌더링 처리시설로 살처분 가축(사체)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적재함 바닥을 혈액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비닐 등으로 넓게 덮고 소독약을 살포한 후 사체를 적재한다.

나. 가축의 사체를 적재시 최대한 오염되지 않도록 하고 적재한 사체의 윗부분에 소독약을 살포한 후 비닐 등으로 새지 않도록 덮고 작업에 사용한 기구 및 도구, 장소 등을 '청소·세척 및 소독요령'에 따라 즉시 소독을 실시한다.

다. 운반차량에는 가축방역관이 탑승하여 살처분 가축이 처리장에 인계될 때까지 전과정(적재·운반·하역과정, 출발전·인계후 차량소독 등) 및 사후처리과정을 감독해야 한다.

라. 운반차량은 처리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통제초소에서 소독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장소를 경유하거나 정차해서는 안되며, 이동시에는 방역사항을 고려하여 최단거리 경로로 운행해야 한다.

마. 가축의 사체로부터 추가 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체를 하역한 즉시 운반차량에

대하여 ‘청소·세척 및 소독요령’에 따라 세척 및 소독을 실시하고 마지막 운반작업이 끝난 후 최소한 7일간 감수성 가축 및 생산물을 운반해서는 안된다.

바. 가축의 사체 하역작업에 사용된 기구 및 도구, 장소 등에 대해서도 청소·세척 및 소독요령에 따라 즉시 소독을 실시한다.

사. 살처분한 가축의 운반에 참여한 사람은 살처분 및 소각·매몰요령에 따른 방역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2) 가축의 지정도축장 출하시 방역요령

가. 방역지역 내의 이동제한 가축은 가축방역관의 승인 없이 이동되어서는 안된다. 다만, 정부수매 도축 등의 목적으로 지정도축장에 출하하는 경우에는 가축방역관의 감독하에 운반되어야 한다.

- ① 가축방역관은 출하를 희망하는 농가에서 사육하고 있는 감수성 가축 전체에 대한 임상검사를 실시한다.
- ② 임상검사 결과 의심증상이 발견되는 경우 의사환축 발생시 조치사항에 따라 조치한다.
- ③ 운반차량의 내·외부에 대한 철저한 세척·소독을 실시하고 출하 및 하차시에도 반드시 소독을 실시하도록 한다.
- ④ 운반차량의 운전자 등에 대하여 농장 출입시 반드시 소독을 실시한다.

⑤ 운반차량에는 가축방역관이 탑승하여 출하가축이 도축장에 인계될 때까지 전과정(적재·운반·하역과정, 출발전·인계후 차량소독 등)을 감독해야 한다.

⑥ 운반차량이 출발하여 도축장으로 이동하는 경로는 방역사항을 고려하여 최단거리로 해야 한다.

나. 가축을 운반하는 차량은 다음의 설비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① 운반차량의 적재함 바닥은 분비물, 분뇨 등 오물이 새지 않도록 비닐로 넓게 덮는 등의 오염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 ② 운반차량 안에는 운반 중 오물누수 등 긴급상황에 대비하여 가축전염병예방방법령에서 정하는 소독약품 및 휴대용 소독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다. 일자별 이동수수 및 이동경로 등에 대하여 기록·관리해야 한다.

4. 닭·오리농장 등 분뇨처리요령

〈표 2〉 참조

5. 추적조사 등 기타 조치사항(도축장·부화장)

1) 도축장 또는 부화장(이하 “도축장 등”)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의심될 때에는 그 즉시 가축의 도축을 전면 중단하거나 의

〈표2〉 닭·오리농장 등 분뇨처리요령

구분	이동제한 기간중	이동제한 해제직전 (해제조건)	이동제한 해제이후
위험 지역 (3km 이내)	발생 농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일 경과 분변검사후 농장내 매몰하거나 60일 경과 분변검사후 가축방역관 감독하에 농장 밖 반출, 기록유지 - 분뇨차량 세척·소독 - 분뇨 임의처리 농장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주간 입식시험 실시 - 축사당 닭(6~12주령 산란계 중추) 최소 5수 이상
	예방살처 분농장 중 양성 판정농장		
경계지역 (3~10km)	기타 농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제한 해제후 농장밖 반출 허용 - 분뇨차량 농장 출입시 소독 철저, 기록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뇨차량 농장출입시 소독철저 - 닭·오리 구분, 전용차량 출입 자율정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장내 매몰 또는 축사내 보관. 다만 산란계는 농장내 이동허용, 농장 밖 반출금지 - 매일 소독 실시 		
일반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장 외부 반출금지 다만, 닭 분뇨는 가축방역관 지도·감독하에 경계지역내 공동처리장으로 이동가능 - 주기적 소독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제한 해제후 농장밖 반출 허용 - 분뇨차량 농장 출입시 소독 철저, 기록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뇨차량 농장출입시 소독철저 - 닭·오리 구분, 전용차량 출입 자율정착

사환축이 있는 장소로의 사람·차량 등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며 주변지역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한다.

- 2) 의심축을 발견한 가축방역관은 즉시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 검역원에 의심축에 대한 병성감정을 요청토록 조치한다.
- 3) 오염된 운반수단 등에 대한 세척과 소독

철저

- 4) 의사환축 및 의사환축과 접촉한 가축의 이동상황에 대한 정확한 기록유지 및 추적조사를 실시한다.
- 5)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양성판정시 당해 도축장 등을 즉각적으로 폐쇄하고 접촉동물에 대해서는 출하농장까지 추적하여 방

역조치를 해야 한다.

- 의사환축 발견이전에 의사환축과 같이 계류되었던 상태에서 이미 도축되어 보 관중인 해당 도체의 폐기 및 도축장 밖으로 출하된 지육 등의 회수·폐기

- 6) 발생농장에서 출하된 가축을 도축한 도축장
- 발생일 기준 과거 7일내에 출하된 가축이 도축장에 계류되어 있는 경우 당해 계류가축 전수수를 지체없이 살처분
 - 발생일 기준 과거 14일내에 출하가축을 도축한 도축장을 방문한 차량 또는 사람이 출입한 다른 농장에 대해서는 차량 또는 사람이 마지막 방문한 날부터 14일 이상 이동제한 조치를 하고, 사육 중인 감수성 가축에 대해 임상검사(닭) 또는 정밀검사(오리 등) 실시

6. 축산농가 당부사항

1) 조류인플루엔자 비발생지역

- 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역 방문을 금지한다.
- 나. 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차량 등에 대한 통제 및 소독을 철저히 한다.
- 다. 사육가축에서 의심증상이 관찰될 경우 즉시 시장·구청장·읍장·면장 또는 시·도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한다.
- 라. 발생지역·위험지역·경계지역의 농장을 방문하고 돌아온 사람은 2주 이상 농

장방문을 금지하고 축산농가는 이러한 사람의 농장출입을 금지한다.

- 마. 쥐 등 설치류 구서 및 파리 등 매개곤충을 구제하고 축사 내·외부를 주기적으로 세척·소독한다.
- 바. 가축의 투매나 홍수출하를 자제한다.
- 사. 발생지역, 오염·위험·경계지역에서 불법 반출한 닭·오리 등 감수성 동물의 구입을 금지하고 이러한 가축을 판매·운반해주는 업자를 가까운 경찰서나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한다.
- 이동제한 위반농가와 이동제한지역 가축을 불법 유통시켜 준 운반업자, 이를 도축해 준 도축장영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음.

2)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지역(발생농장 반경 10km내 이동제한지역)

- 가. 방역기관의 허가 없이 가축의 농장입식이나 농장 밖 반출행위를 금지한다.
- 단, 지정도축장으로 출하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관할 시장·군수로부터 도축장 출하 승인을 받아야 함.
- 나. 사육 중인 가축에서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을 보일 경우 가축방역기관이나 현장주재 가축방역관에게 즉시 신고한다.
- 다. 농장출입구를 1개소로 제한하고 차량·장

비·사람의 이동을 엄격히 통제한다.

- 출입구에 신발 등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 설치·운영

- 농장 출입 차량 및 장비에 대한 철저한 세척 및 소독제 살포

- 일가친척, 인근주민의 농가방문 최대한 자제

-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장, 행사장 출입 자제

- 가축운반차량, 사료차량 등의 출입시 가능한 탑승자의 하차를 제지하고 불가피한 경우 농장에서 별도의 장화 제공, 농장 출발시 차량·사람에 대한 세척·소독 실시

라. 발생지역내 가축과 접촉한 사람은 당해 지역 출발 이전에 손·신발 세척 및 외부 옷에 소독제를 살포한다.

마. 방역기관의 허가 없이 가축의 분뇨를 야외에 살포하거나 농장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바. 보건소 등 의료관계기관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거나 항바이러스제제를 제공시 접종을 받거나 약을 복용한다.

8. 닭·오리 도축장 방역수칙

1) 닭·오리 운반차량 관리

가. 닭·오리 전용 운반차량에 한해 출입을 허용

나. 차량번호, 출입시간, 경유농장 등을 기록할 것.

다. 자체검사원 및 가축방역관은 하차 전 차량소독과 외부에서 1차 임상관찰 실시

라. 자체검사원 및 가축방역관은 하차시 개체별로 2차 임상관찰 실시

마. 하차 즉시 세차장에서 차량을 소독(바닥·하체·바퀴 등 차량 전체)하되, 수의과학검역원 권장소독약으로 소독 실시

2) 일반 출입차량 관리

가. 도축장 입구에 설치된 소독시설에서 소독 실시 후 출입 허용

나. 모든 출입차량 차량번호, 운전자 성명, 출입시간 등 기록 유지

3) 종업원 등 출입자 통제·소독

가. 도축장 입구에서 필요인원만 출입토록 통제
나. 모든 출입자에 대해 소독 실시(특히 손·신발 소독)

4) 계류장·도축시설 주변소독

가. 작업 전·후 계류장, 도축시설 주변 소독 실시

나. 도축시설은 완전히 세척을 한 후 소독 실시
다. 도축부산물, 퇴비(액비)는 매일 소독 실시 